

중국에서 발생하여 감염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하여 2020년 1월 31일 이후 여러 번에 걸친 각의 승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에 의한 공표 등을 감안하여 법무성에서는 당분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관법’이라 함) 제5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4월 2일까지 재입국허가(간소화된 재입국허가를 포함함. 이하 동일)에 의하여 출국한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러한 체류자격을 갖지 않는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일본인의 자녀를 포함함. 이하 동일)이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월 3일 이후에 재입국허가에 의하여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위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륙거부 대상이 되오니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분은 상륙거부 대상지역으로의 도항을 삼가주시요.

특별영주자에 대해서는 입관법 제5조 제1항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위의 각 조치에 따라 상륙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 상륙 신청일 전14일 이내에 다음 지역에 체재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 아시아 :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한민국 (전역), 싱가포르 공화국, 타이 왕국, 대만,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역), 필리핀 공화국, 브루나이 다루살람,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말레이시아
- 대양주 :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연방, 뉴질랜드
- 북미 : 캐나다, 미합중국(미국)
- 중남미 : 에콰도르 공화국, 칠레 공화국, 도미니카국, 파나마 공화국, 브라질 연방 공화국, 볼리비아 다민족국
- 유럽 : 아이슬란드 공화국, 아일랜드, 알바니아 공화국, 아르메니아 공화국, 안도라 공국, 이탈리아 공화국, 영국, 에스토니아 공화국, 오스트리아 공화국, 네덜란드 왕국, 북마케도니아 공화국, 키프로스 공화국, 그리스 공화국, 크로아티아 공화국, 코소보 공화국, 산마리노 공화국, 스위스 연방, 스웨덴 왕국, 스페인 왕국,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공화국, 세르비아 공화국, 체코 공화국, 덴마크 왕국, 독일 연방 공화국, 노르웨이 왕국, 바티칸 시국, 헝가리, 핀란드 공화국, 프랑스 공화국, 불가리아 공화국, 벨기에 왕국,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폴란드 공화국, 포르투갈 공화국, 몰타 공화국, 모나코 공국, 몰도바 공화국, 몬테네그로, 라트비아 공화국, 리투아니아 공화국, 리히텐슈타인 공국,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대공국
- 중동 : 이스라엘국, 이란 이슬람 공화국, 터키 공화국, 바레인 왕국
- 아프리카 : 이집트 아랍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모리셔스 공화국, 모로코 왕국

○ 중화인민공화국 후베이성(湖北省) 또는 저장성(浙江省) 발행의 중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

○ 홍콩에서 출항한 선박 웨스테르담(Westerdam)호에 승선하고 있던 외국인